

# kiri Weekly

2015.12.21 제364호

## 포커스

민영건강보험의 한방비급여 보장을 위한 선결과제

## 글로벌 이슈

보험회사의 온라인 직접판매 채널 전략  
스마트 공장 보급과 보험산업

## 금융시장 주요지표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이슈와 포커스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여의도동 35-4) 8층 보험연구원 (문의 : 변철성 수석담당역 / 02-3775-9115)



# 민영건강보험의 한방비급여 보장을 위한 선결과제

정성희 연구위원, 이정택 연구위원

## 요약

한의학계와 보험업계 간 한방비급여 보장을 위한 공동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실손표준화 이후 보장에서 제외되었던 한방비급여의 재보장이 추진 중에 있음. 국민 건강보장성 확대를 위한 민영건강보험 역할 강화 차원에서 한방비급여의 보장 필요성은 사회적으로도 공감하는 부분이나, 표준화 미비, 과다 진료비 격차, 치료목적 불명확 등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한의학계는 한방비급여의 표준화 및 한방 표준진료지침 수립을 위해 노력하고 보험업계는 과잉진료·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리스크 통제장치 마련이 중요한 시점임.

최근 들어 한방의료 서비스에 대한 민영건강보험의 보장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한의학계와 보험업계는 한방비급여 보장을 위한 상품개발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함.<sup>1)</sup>

- 2009년 실손의료보험 표준화<sup>2)</sup>를 통해 한방과 치과의 경우 급여의 법정본인부담분은 보장 내역에 포함된 반면, 비급여 부분은 보장에서 제외됨.
  - 한방은 양방<sup>3)</sup>에 비해 비급여에 대한 진료항목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보장대상 확인이 어렵고, 처방에 대해서도 치료목적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제외된 주요 이유임.
- 한방의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의존도가 높은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 각계<sup>4)</sup>에서 표준화 이후 제외된 한방비급여의 보장 필요성을 건의함.
- 이에 따라 한의학계는 신뢰성 높은 통계를 보험업계에 제공하고 보험업계는 제공된 통계를 근거로

1) 2015. 12월 ‘한방비급여 보장 보험상품 개발과 관련한 한의학계와 보험업계 간 합의문’을 발표함.  
 2) 표준화 이전에는 손보사는 한방의 입원의료비(급여, 비급여)를, 생보사는 한방의 급여에 대한 법정본인부담분(입원, 통원)을 보장해주는 실손의료상품을 판매함.  
 3) 법적 용어로는 의과 또는 의과계 등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한방과 비교되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임.  
 4) 2012. 10월 한의학계는 ‘한방비급여 보장을 위한 표준약관 개정’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청원, 2014. 6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 한방비급여 의료비 보상제도개선 조치사항’ 발표 등.

한방보장상품 개발에 노력하며, 향후 한방비급여 보장을 위한 표준약관 개선 추진에도 협력하기로 합의함.

- 한방의료이용 통계가 확보되면 먼저 상품 출시를 원하는 보험회사 중심으로 한방 실손특약 또는 정액형 상품을 출시함.<sup>5)</sup>
- 한방비급여 상품의 판매 경과 및 안정적인 리스크 통제장치 구축 등을 고려한 후, 향후 상품심 의위원회(2016년 설립 예정)에서 한방비급여 보장을 위한 표준약관<sup>6)</sup> 개선을 도모하기로 함.

■ 주로 서민·사회보호계층이 경증의 외래진료 중심으로 한방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 보장 확대라는 차원에서도 한방에 대한 민영 건강보험의 역할 강화는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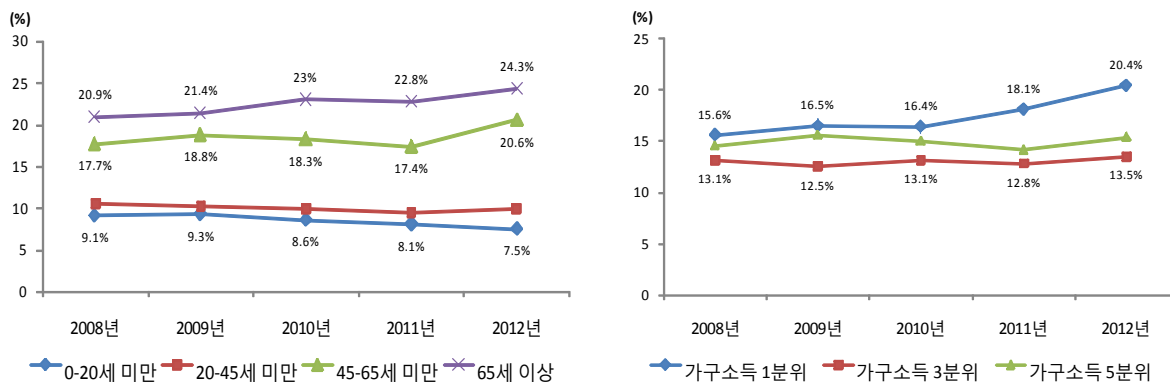
- 한방의료는 주로 40대 이상 고령자(74%), 여성(66.3%),<sup>7)</sup> 저소득계층이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이들의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 한방의료 진료 내용을 보면 요통 등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침, 물리요법 등의 치료를 외래(71.3%)를 통해 주로 이용하고 있음.
  - 한방 진료를 받는 주요 이유는 요통(12.9%), 근육부상(9.1%), 관절염(9.0%), 허리뺨(8.7%) 등으로 조사됨.
  - 가장 많이 받는 한방 치료법으로는 침치료(48%), 물리요법(20.3%), 탕약(15.8%), 뜸(6.4%), 부항(5.9%) 등임.

5) 보험회사별로 한방비급여의 보장내용이 상이한 개별약관(표준약관을 준용하되, 상품별 특성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 가능한 약관) 형태로 개발되는 상품.

6) 표준약관에 한방비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모든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 상품에서 동일한 한방비급여 보장내용으로 판매하게 됨.

7)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한방 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

〈그림 1〉 한방의료 외래 서비스 이용률 변화추이(2008년~2012년)



자료: 의료패널(2008년~2012년).

■ 현재, 비급여 의료비의 진료·원가정보에 대한 파악·통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영건강보험을 통한 한방비급여 보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난 표준화에서 한방비급여가 보장에서 제외된 원인을 포함하여 많은 선결 요건들이 해결될 필요가 있을 것임.

- 우선, 한방치료의 특성상 양방에 비해 표준화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비급여 항목의 표준화·세분화를 통해 진료 내용 및 적정성 판단을 위한 기준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현재 한방비급여의 행위 항목은 16개 정도로 이는 양방 720개의 2.2%에 불과한 수준임.
- 또한, 한방비급여의 항목별 진료비는 한방병원·한의원 간 뿐만 아니라 동일 한방 의료기관 내에서도 편차가 큰 상황으로 한방비급여 진료비의 적정 수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예로 약침<sup>8)</sup>의 경우 병원에 따라 60배(5,000원~300,000원) 이상 격차가 발생하며, 동일 병원 내에서도 추나요법<sup>9)</sup> 치료비로 최소 1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차이가 발생함.
- 더욱이, 한방치료는 한의사의 재량에 따라 질병치료와 병행하여 체질개선 등을 위한 한방제제의 처방 및 조제가 이루어지고 있어 한방처방 내용만으로는 치료목적인지 확인이 곤란함.
  - 진료내역서에 ‘탕약 A’, ‘한방처방’ 등으로 표기하고 있어 치료내역을 구분하기 어려우며, 한방제제의 경우 한방의료기관의 자율적인 가격책정이 가능함.<sup>1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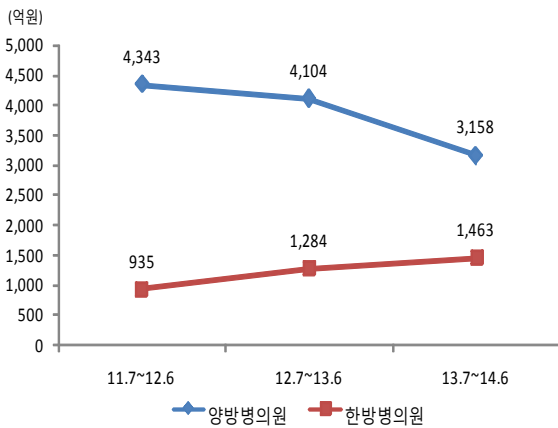
8) 한약재의 유효성분을 추출하여 경혈이나 아픈 곳에 주입하는 치료법.

9) 한의사가 손이나 신체 일부분, 보조기구 등을 이용하여 추나치료 테이블에서 환자의 신체표면에 자극을 가하여 관절, 근육, 인대 및 신경계를 조절하고 교정하는 치료법.

10) 조용운(2013), 『실손의료보험의 한방법정비급여 진료 보장을 위한 선결요건』 중 수정하여 재인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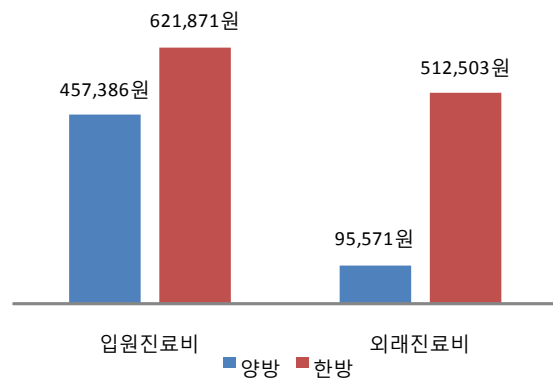
- 한편, 실손의료보험에서 한방비급여를 보장할 경우 한방의료 이용량 증가 등으로 인한 손해율 증가 및 보험료 급증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음.
  - 양방과 한방을 모두 보장하는 자동차보험의 경우를 보면 양방 진료비는 최근 3년간 감소한 반면, 한방 병·의원 진료비는 오히려 높은 증가율 추세를 보임.
  - 동일·유사 질환자의 1인당 외래 진료비는 한방이 양방보다 5.4배 높음.

〈그림 2〉 자동차보험의 양·한방 간 진료비



자료: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통계.

〈그림 3〉 자동차보험의 양·한방 간 입·통원 진료비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 청구자료.

■ 따라서, 민영 건강보험의 한방비급여 보장을 위해 제기되는 선결요건을 해결하고 과잉진료·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한방비급여 관리체계 및 보험리스크 통제장치 마련이 긴요한 시점임.

- 한의업계는 한방 진료행위의 특성을 고려한 표준화·세분화 방안을 마련하고 한방의료에 대한 신뢰도·투명성 제고를 위한 한방 표준진료지침 수립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보험업계는 상품개발 단계에서 불필요한 진료 발생이나 필요 이상의 진료량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상품·제도 측면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함.
  - 예를 들어 치료 목적으로 한방치료 진단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보장횟수를 제한하는 실손형이나 수술·진단비에 대해서 일정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액형으로 설계 **kiri**